

○庚東均議員 반대하겠습니다.

○議長 李宗一 그러면 金英植議員님은 아까 그 문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金英植議員 아니, 저 이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요, 이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인데 6km가 4km로 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6km로 취급하실 겁니까. 4km로 취급해 주실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본회의에 내 보내는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것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이렇게 써 올려 보내면 어제께도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국장님 답변과 그것이 달라 가지고 즉석에서 구두로 시정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4km로 통과를 시키실 겁니까? 6km로 통과를 시키실 겁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종으로 올라온 것은 어느 쪽에다 비중을 두시는 것인지 이것을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를 활적에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실한 것을 언질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長 李宗一 지금 이 문제를 저도 확인을 더 하고 또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5分 停會)

(10時 45分 繼開)

○議長 李宗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金英植委員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6km가 4km로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구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 심도있게 지시하겠습니다. 金英植議員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庚東均議員 그 동안에 의견조정에도 납득이 안가십니까?

○庚東均議員 납득이 안가서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議長 李宗一 네.

○庚東均議員 갑자기 이런 청원이 들어오니까 통과사건도

○議長 李宗一 그러면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와 불규칙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가 있을 때까지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8分 散會)

○出席議員(32人)

| | | |
|-----|-----|-----|
| 李宗一 | 韓賢惠 | 庚應鳳 |
| 金星煥 | 李應洹 | 李天揆 |
| 金順錦 | 裴相大 | 金英植 |
| 金鍾烈 | 沈載祚 | 朴映吉 |
| 鄭聖釤 | 洪性煥 | 朴東七 |
| 俞南烈 | 韓大運 | 鄭晚植 |
| 朴相洙 | 金東暉 | 蔡在善 |
| 金世昌 | 金忠煥 | 金平田 |
| 李震杓 | 金孝詰 | 李仁求 |
| 庾東均 | 金裕顯 | 尹明奎 |
| 韓守均 | 權五範 | |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5.8.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1. 이천규의원 외 7인

나. 회부일자 : '95.8.1.

다. 상정일자 : 제3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5.8.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남렬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1995.1.5. 법률 제4877호) 및 같은법시행령(1995.7.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원에 대하여 매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정활동비 350,000원 지급(안 제2조)

○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에 50,000원 지급(안 제3조)

○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 시 여비 지급(안 제4조 내지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동조례(안)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는 종전 내무부지침에 따라 의정보고회 등 의정활동비로 지급되었던 연간 168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당초 지방의회의원이 기대하였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회의수당은 회의참석시 1일 5만원으로 회기중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음.

여비의 경우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범위를 축소하였음.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나, 회의수당등의 지급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되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떠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명예직이라는 취지에 따라 여론의 부정

적인 시작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정활동의 합리적인 지원방안 연구 등 자치제도의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유남렬 위원) : 회기중 휴회(공휴일, 일요일 등)하였을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는가?

○ 답변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현행 조례에서는 휴회중이라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에 회의수당 5만원을 지급하며, 회기중이라도 휴회하였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4 |
|----------|---|

발의년월일 1995. 8. 1.

발의자 이천규 의원

외 7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1995.1.5. 법률 제4877호)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1995.7.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의원에 대하여 매월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정활동비 350,000원 지급(안 제2조)

○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에 50,000원 지급(안 제3조)

○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여행시 여비지급(안 제4조 내지 제6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5. 법률 제4877호) 제32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5.7.1. 대통령령 제14703호) 제15조, 별표 4 내지 별표 7

4. 예산조처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으로 한다.

③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 구 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현지교통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 비 (1일당) |
|------------|------|------|------|-------|----------------|--------------|--------------|
| 의장· 부의장 | 1등급 | 2등정액 | 정 액 | 정 액 | 6,500 | 20,700 | 11,000 |
| 의 원 | 2등급 | 2등정액 | 정 액 | 정 액 | 6,500 | 16,200 | 10,500 |

- 비 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심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비 (1야당) | 준비금 | | |
|------------|--|--|----------|-----------|----------------------------------|--------------------------------------|--------------------------------------|-----------|----------------|-----------|
| | | | | | | | | 15일 미만 | 15일이상 30일미만 | 30일 이상 |
| 의장· 부의장 |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1등 정액 | 실비액 | 가동급25 나동급25 다동급25 라동급25 | 가동급130 나동급 90 다동급 72 라동급 62 | 가동급107 나동급 78 다동급 58 라동급 49 | 140 | 170 | 195 |
| |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 | 가동급20 나동급20 다동급20 라동급20 | 가동급114 나동급 74 다동급 55 라동급 46 | 가동급 81 나동급 59 다동급 44 라동급 37 | 130 | 155 | 180 |
| 의원 |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2등 정액 | 실비액 | 가동급20 나동급20 다동급20 라동급20 | 가동급114 나동급 74 다동급 55 라동급 46 | 가동급 81 나동급 59 다동급 44 라동급 37 | 130 | 155 | 180 |
| | | | | | | | | | |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등은 국외여비규정 제16조 관련(별표 2)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관련 법령개정내용 요약

| 종 전 | 현 행 |
|---|---|
| <p><u>지방자치법</u></p> <p>제32조(의원의 보수) 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p><u>지방자치법(개정 '95.1.5.)</u></p> <p>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p>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종 전 | 현 행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법시행령 |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 '95.7.1)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일비와여비의지급)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회의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 |
|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일비 지급 범위(제15조 관련) |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관련)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일비 지급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6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 회의원</td> <td>50,000원 이내</td> </tr> </tbody> </table> | 구 분 | 일비 지급 범위 | 시·도의회의원 | 60,000원 이내 | 시·군·자치구의 회의원 | 50,000원 이내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의정활동비 지급범위</th> </tr> <tr> <th>의정자료·수집연구비</th> <th>보조활동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월 500,000원 이내</td> <td>월 10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 치 구의회의원</td> <td>월 350,000원 이내</td> <td></td> </tr> </tbody> </table> | 구 분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보조활동비 | 시·도의회의원 | 월 500,000원 이내 | 월 100,000원 이내 | 시·군·자 치 구의회의원 | 월 350,000원 이내 | |
| 구 분 | 일비 지급 범위 | | | | | | | | | | | | | | | | | |
| 시·도의회의원 | 60,000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시·군·자치구의 회의원 | 50,000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 | | | | | | | | | | | | | | | | |
|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보조활동비 | | | | | | | | | | | | | | | | |
| 시·도의회의원 | 월 500,000원 이내 | 월 100,000원 이내 | | | | | | | | | | | | | | | | |
| 시·군·자 치 구의회의원 | 월 350,000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별표 5, 별표 6 생략】 | “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회의수당 지급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일 6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일 50,000원 이내</td> </tr> </tbody> </table> | 구 분 | 회의수당 지급범위 | 시·도의회의원 | 일 60,000원 이내 | 시·군·자치구의회의원 | 일 50,000원 이내 | | | | | | | | | | | |
| 구 분 | 회의수당 지급범위 | | | | | | | | | | | | | | | | | |
| 시·도의회의원 | 일 60,000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시·군·자치구의회의원 | 일 50,000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 【별표 6, 별표 7 생략】 | | | | | | | | | | | | | | | | | |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실사보고서

'95.8.7.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성산2동 200-69
성명 : 강수환 외 3,068인

나. 소개의원 : 김유현 의원, 윤명규 의원,
한수균 의원

다. 접수일자 : '95.8.4.

라. 회부일자 : '95.8.4.

마. 상정일자 : 제32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5.8.7.) 상정, 질의토론, 채택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성산2동 45,000여명의 주민이 17년간 운행하던 진화운수 33번은 대중교통으로서 신촌까지 많은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운행노선을 7월1일부터 대체노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시킴으로써 주민들은 서울시운수행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135-1 유성운수현노선 연장을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과, 진